

『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진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「헌법」 제10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
-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요구되면서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-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-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(안 제8조)
-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「헌법」 제10조 및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헌법」 제10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
-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요구되면서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,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,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(안 제8조),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(안 제10조) 등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,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

-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이며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헌 법」

제10조 :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

□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제25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)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